

##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need of the Implementation for Criminal Penalty of Stalking

Jeongbeom, Jang<sup>a,\*</sup>, Sangcheol, Lee<sup>b,1</sup>

<sup>a</sup>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Yongin University, 470 Samgadog, Cheoingu, Yongin 449-714, Republic of Korea

<sup>b</sup>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Yongin University, 470 Samgadog, Cheoingu, Yongin 449-714, Republic of Korea

### ABSTRACT

A stalking is becoming more diverse and the methods are developing over time as the society has changed over time due to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but an initial countermeasure seems to be difficult as there is no sufficient legislations against such crimes as stalking. Our country passed laws regulating such stalking at 1999 and four more additional bills were proposed until the 18th National Assembly but they failed to become legalized. Two more additional bills were proposed during 19th National Assembly which are still pending. Crimes such as stalking violates and invades physical and psychological freedom of the victims and the crimes are severely inveterate and intentional.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Great Britain, Germany, and Japan enacted legislations that strictly regulates stalking and also appropriate responses. As these exemplary cases show, it is essential that our country also requires an effective legislations against crime of stalking and protecting a victim of the crime.

### KEYWORDS

stalking  
cyberstalking  
continuous harassment  
the Minor Offenses Law  
summary justice

스토킹은 최근 사회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고 수법이 발전하고 있으나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거의 없어 초기 대응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규제 관련 법안은 1999년 발의된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도 2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스토킹 규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의 도입이 요청된다.

스토킹  
사이버스토킹  
지속적 괴롭힘  
경범죄 처벌법  
즉결심판

© 2014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 Corresponding author. Tel. 82-010-8506-2177. Fax. 82-031-8020-2882  
Email. jb1014@naver.com

1 Tel. 82-010-3763-2710. Email. lsc0707@korea.com

### ARTICLE HISTORY

Received Apr. 20, 2014

Revised Apr. 20, 2014

Accepted Jun. 27, 2014

## 1. 서론

스토킹(stalking)은 과거에는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대중의 인기를 많이 받는 일부 특정계층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는 문제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스토킹은 더욱 다양화되고 일반화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 스토킹 행위와 이에 따른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나 폭행, 협박, 상해 등 고유의 일반 형사사범과 틀리게 독립된 범죄행위로 구분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에서도 스토킹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고 범죄로 규정되기 전까지 스토킹은 괴롭힘, 성가시게 함, 그리고 어떤 때에는 단지 가정폭력(domesticviolence)으로 지칭되었을 따름이다(이정호, 2008: 118).”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정신의학, 심리학, 형사사법 관련 학계 및 실무전문가들이 스토킹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시하고 그 심각성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효과적인 강력범죄 예방책의 일환으로 스토킹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99. 5.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6회에 걸쳐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법안통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법안통과가 되지 아니한 주된 이유는 아직 스토킹 행위의 개념과 그 유해성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고, 사생활 자유 영역과 규제되어야 할 스토킹 행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입법을 통한 스토킹 규제 시 사생활 영역의 침해우려가 있으며,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등 기존 법률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그러나 스토킹은 설령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직접적인 신체적 외상 등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더라도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접근과 괴롭힘을 당함으로써 사생활 자유를 침해당하고, 향후 폭행, 협박, 상해, 납치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자신 및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해 위협을 느껴 공포와 불안감,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즉 현행 법제에서는 “스토킹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가져오는 프라이버시나 행동의 자유 침해 및 정신적 고통과 같은 스토킹의 고유한 범의침해 행태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임중호, 2013: 5).”

따라서 스토킹의 개념 및 실태와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가능성을 살펴보고, 주요나라의 스토킹 규제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스토킹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를 통해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스토킹의 개념

#### (1) 학문적 개념

이시형 외(1998: 1)는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좋은 감정과 상대도 나를 좋아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이성애 접근해서 상대가 싫어하는 행위를 고의적, 계획적으로 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신체적으로 폭행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이진호 외(2002: 33)는 “일정기간 동안 의도적·반복적으로 행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일반이라면 누구나 공포나 불안을 느낄만한 일련의 행동(편지,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기,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방문, 기물파손, 납치, 위협 및 폭력행위 등)으로 특징이나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방적이고 병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김학태(2011: 182)는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점적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이며 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망상적 행위이다.”고 하였다.

#### (2) 국회 발의 법률안 개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2012. 8. 27.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제2조 제1호에는 스토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스토킹’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 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특정인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 다.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 또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
- 라.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특정 물건·그림 또는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마. 스토킹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

## 2.2 스토킹의 실태 및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 가능성 검토

### (1) 스토킹의 실태

#### 1) 스토킹의 유형

스토킹의 유형은 매우 다양화하여 정형화하기 어려우나 전형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집요하게 이루어지는 구애 전화, 음란전화, 음담패설 ② 계속해서 따라다니거나 집, 학교,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것 ③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쫓아거나 추근거리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것 ④ 집요한 선물공세 또는 편지 보내기 ⑤ 만나자, 교체하자, 술 따르라는 등 의무없는 일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 ⑥ 현저하게 거칠고 품위 없거나 난폭한 언동을 반복하는 것 ⑦ 오물, 동물사체 등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보내는 것 ⑧ 인터넷이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원하지 않는 접근을 반복하여 시도하는 것(사이버스토킹) ⑨ 폭행, 협박, 납치, 감금, 강간 등 신체적 공격(김용욱, 2004: 50)”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 2) 스토킹 피해 언론, 방송 보도 사례

스토킹 피해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속적인 피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계속 가중되는 것에 있다. 스토킹은 단순한 지속적인 괴롭힘 등에서부터 시작한 이후 더 강한 범죄행위로 나아가서 살인죄, 업무방해죄로 구속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명문대생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최근에 명문대학생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해 놓았으나 범행 3개월 만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는데 2년 전에도 전 여자친구를 길에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스포츠한국, 2014. 3. 12.자 사회면).”

##### ② 스토킹으로 업무방해 30대 탈북여성 징역형

“서울남부지법은 탈북자 방송사 대표 51살 김 모씨를 스토킹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 38살 정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으로 인해 김씨가 업무방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고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하루에 수백차례에 걸쳐 결혼하자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김 씨에게 보내고 매일 김 씨가 근무하는 방송사를 찾아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KBS, 2013. 10. 24.자 사회면).”

##### ③ 소름 끼치도록 따라다녀도 . . . 8만원짜리 딱지뿐

“경범죄로 분류된 스토킹 . . . 실효성 논란, 노상방노와 같은 수순으로 취급, 처벌 가벼워 스토킹 제지 못해, 당해 본현직 검사 ‘대책 없더라’(중앙일보, 2013. 8. 16.자 사회면).”

##### ④ 전 여자친구 스토킹한 30대 즉결심판 청구

“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김모(39)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50분께 전 여자친구 강모(36·여)씨에게 70차례 전화를 걸고 찾아가는 등 최근 일주일간 강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괴롭힌 혐의다. 김씨의 스토킹을 참지 못한 강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잇따른 계도조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김씨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등 ‘지속적 괴롭힘’ 처벌에 대한 신고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경인일보, 2014. 1. 8.자 사회면).”

⑤ 유명 연예인 스토킹 피해

“2012. 6. 18. 방송된 MBC ‘기분 좋은날’에서 방송한 연예인 스토킹 피해사례를 보면 배우 소유진이 최근 자신의 집 앞에 매일 서성되는 스토키 때문에 공개적으로 CCTV를 설치했으며, 가수 김창완을 스토킹한 가해자는 김창완을 11년 동안 쫓아다니며 심리적 압박감과 코뼈를 부러뜨리는 신체적 상해를 가해 1년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그 당시 김창완은 ‘창살없는 감옥’이라고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그 외에도 텔런트 김미숙, 채시라 등이 스토킹을 당했으며, 도지원의 경우 승용차 트렁크에 5시간 동안 감금되기도 했다. 또 개그우먼 문영미는 탈영한 군인에 의해 여관에서 감금당했다. 뿐만 아니라 2년 전 배우 서지석은 한 행사장에서 서지석씨의 여자친구라고 밝히는 여성에 의해 스토킹을 당했고, 동방신기 윤희호와 창민의 사생팬 경우에는 빈 집에 찾아왔다고 했다. 이에 한 매체 편집국장은 ‘스토키들의 행위는 당하는 사람들의 피를 말리는 행동이다. 스토키들의 어긋난 행동은 (스토킹을 당하는)스타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티브이데일리, 2012. 6. 18.자).”

3) 스토킹 피해 통계 자료

‘한국여성의 전화’에서는 “스토킹 상담이 2009년 86건, 2010년 90건, 2011년 12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해당 상담 통계는 다른 피해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중복집계하지 않아 실제 피해는 훨씬 많고, 피해유형으로는 싫다는 데도 계속 만날 것을 강요, 성 관계 사실을 부모, 학교,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 상대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집, 학교, 직장 등 생활공간을 침범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10년 서울 소재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을 주된 표본으로 494명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관련 설문조사 결과 스토킹 피해경험자는 24.3%(120명)이었고, 연령별로 구분하면 20대 34.2%(41명), 30대 36.7%(44명), 40대 21.7%(26명), 50대 이상 7.5%(9명)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81.3%는 여성이었다(이봉한, 2011: 7~8).”

“2013년 대학생 사이버스토킹의 설문조사에 관한 분석(남 104명, 여 146명, 총 250명) 결과 사이버스토킹 피해경험자는 총 7.6%(19명)이었고, 이 중 남학생은 6.48%(7명), 여학생은 8.45%(12명)로 나타났다(김홍성, 2014: 37~38).”

(2)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 가능성 검토

현행 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가능성이 있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1) 경범죄 처벌법 적용 가능성

2012. 3. 21. 개정되어 2013. 3. 22.부터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41호에 의하면, 스토킹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지속적인 접근을 통한 괴롭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범죄 처벌법으로의 적용은 처벌이 너무 경미하여 스토킹 행위에 대처하는데 역부족이므로 실효성있는 대응방안이라 할 수 없고, 원래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하여 만든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김학태, 2011: 187).”

2)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

“개별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그것의 행위형태에 따라 형법상의 폭력행위와 관련된 여러 범죄구성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법률에 규정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이건호, 2004a: 138).” 형법상의 상해죄(형법 제257조), 중상해죄(형법 제258조), 폭행죄(형법 제260조),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체포감금죄(형법 제276조), 중체포감금죄(형법 제277조), 특수체포감금죄(형법 제278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명예훼손죄(제307조),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주거신체수색죄(형법 제321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갈죄(형법 제350조),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등이 그러한 규정이다. 그러나 상해죄나 협박죄 등의 경우 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스토킹 자체에 대한 위와 같은 범조항의 적용은 쉽지 않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

동법 제74조 제1항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

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사이버 스토킹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피해자에게 말이나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는 그 규제 범위가 너무 좁고, 다른 한편 공포심이나 불안감의 유발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그 판단 기준이 공포심 등의 정도,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 등을 느꼈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법규로서는 너무 모호하거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이성호, 2005: 32)."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가능성

동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호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동 법률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버 스토킹 등 일부의 범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 가능성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 동법 제2조 3호에 규정한 각목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 중 스토킹 행위와 관련될 수 있는 범죄에는 체포·감금죄(제276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주거·신체수색죄(형법 제321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갈죄(형법 제350조),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등을 들 수 있다.

동 법률의 경우에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있어야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정구성원이라도 폭행, 협박 등 행위가 없거나 일반인에 의한 스토킹 행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 3. 외국의 스토킹 규제 입법 현황

#### 3.1 미국

미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스토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1990년 최초로 캘리포니아주의 '스토킹 금지법'이 제정된 후 1992년에 27개 주가 유사한 법을 제정하였으며, 현재에는 50개 주 모두가 스토킹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임중호, 2013: 6)." "미국의 각 주의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방식에 있어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토킹에 대한 전형적인 정의는 고의성·악의성·반복성을 갖는 따라다니기 및 괴롭히기이다(이한규, 2009: 5)." "미국 각 주들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 주들은 초범의 경우 1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죄로 보고 있다(박상열, 2003: 737면)."

#### 3.2 영국

"영국에는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 1988년 부당통신법(Malicious Communication Act 1988)이 제정되어 타인에게 고통 또는 근심을 야기할 의도로 음란하거나 심히 모욕적인 메시지 또는 위협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편지 또는 글을 보낼 경우를 규율하게 되었다(김재권, 2009: 238)." 그 이후 "1997년 괴롭힘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이 제정되어 현재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에서 적용되고 있다(이건호, 2004a: 147)." 괴롭힘방지법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 유형은 "① 괴롭히기, ② 사람으로 하여금 폭력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이는 경죄로서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란 '일련의 행위에 의하여 최소한 2회 이상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각 경우에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타인이 공포심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을 경우'라고 정의하고, 이는 중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용욱, 2004: 60)."

### 3.3 독일

독일은 제40차 형법 개정을 통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7. 3. 31.부터 발효하였다.(박희영, 2007: 108).” “개정된 독일 형법 제238조에 따르면 ①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근처로 접근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수단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3자를 통하여 그 사람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③ 다른 사람의 개인 관련 정보를 남용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물건을 주문, 서비스 신청, 제3자에게 이러한 접촉을 하도록 하는 행위, ④ 다른 사람 또는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또는 자유의 침해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 ⑤ 이에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 등을 집요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생활형성을 중대하게 침해함으로써,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이원상, 2013: 159).”

### 3.4 일본

일본에서는 2000년에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규제대상은 “경고나 금지명령 등의 규제의 대상이 되는 넓은 의미의 스토킹 행위를 ‘따라다니기 등’으로 개념 규정하고, 그 행위 유형으로 8가지를 들고 있으며(제2조 제1항), 그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가중된 스토킹 행위를 ‘스토커행위’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이성호, 2005: 25).”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는 “‘따라다니기 등’의 경우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경찰본부장 등이 가해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공안위원회가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동법 제5조). 가해자가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14조). 또한 스토킹 행위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13조)(이원상, 2013: 161~162).”

## 4. 스토킹 규제 입법안 검토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2012. 8. 27.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2013. 6. 1.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방지법안’은 제안이유, 스토킹 정의 및 주요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먼저 발의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4.1 법 제정 필요성

스토킹을 처벌하거나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형사사법 실무자들 가운데 법률안은 스토킹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여러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법률안과 같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정도인 경우 대부분 현행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법률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스토킹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그 정도가 낮은 단계부터 단속하는 경우, 사생활 영역에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특정 유형의 스토킹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형벌법규를 적용함으로써 처벌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스토킹의 표면적 행위의 외관만을 포착한 것이며, 본질적인 측면의 규제에는 미흡하다(이한규, 2009: 3).” 즉 “현행법에 따른 스토킹 규제는 피해자가 반복적이고 집요한 스토킹으로 말미암아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노이로제, 정서장애, 우울증, 불면성 등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에 그치므로, 이보다 빠른 시점에서 피해자를 스토킹으로부터 보호하고 스토킹이 심각한 폭력범죄로 발전하기 이전에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제 입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이건호, 2004b: 191).”

### 4.2 개념 정의(법안 제2조)

스토킹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반복적인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므로, 제2조 제

1호 각목의 행위 유형에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구성요건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스토킹의 정의에 '스토킹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제2조 제1호 마목)를 규정한 것은 '스토킹이란 스토킹으로 인하여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로 정의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스토킹의 정의에 포함시킨 이유는 기존 스토킹 규제 법안(스토킹처벌에관한특별법안, 1999: 스토킹방지법안, 2003: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05: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스토킹에 대한 정의를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다음 항목의 행위' 등으로 했었는데 이에 대해 학자들이나 법률안 검토보고서상 공포감이나 불안감 유발 등 주관적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하여 2009년 발의된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스토킹의 정의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2009년 발의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스토킹의 개념요소로서 '스토킹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위일 것, 즉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일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이한규, 2009: 7)."고 하는 등으로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서 별도의 제2조 제1호 마목에 포함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제2조 제1호 마목은 개념을 정의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법률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 4.3 응급조치(법안 제3조)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계속할 경우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할 수 있고(동조 제2항 1호)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제2항 2호),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인도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법원의 판단없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임의로 가해자를 보호시설에 인도하도록 하는 것은 구금에 준하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한 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은 가해자에 대한 강제적 수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동일한 보호시설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수용할 경우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안의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

#### 4.4 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법안 제6조)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동조 제1항), 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기본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이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고, 실제 전국적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존 피해자 지원기관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스토킹피해자의 현황과 실태, 지원필요성 및 관련 예산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 4.5 벌칙규정(법안 제7조)

##### (1) 청소년 대상 스토킹의 가중처벌

스토킹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동조 제1항), 청소년을 상대로 스토킹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폭행죄나 협박죄 등 다른 유사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임중호, 2013: 15)."

##### (2) 흉기 휴대 스토킹의 가중처벌

흉기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법안상 스토킹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보다 가벼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의 경우 특수폭행죄 보다 같거나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므로 벌칙규정의 수정이 검토된다.

## 5. 결론

스토킹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이며, 스토킹은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확산범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스토킹의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별도의 독립적인 범죄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나 초기 스토킹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대응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경미하게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가 언제든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나날이 발전하는 스토킹의 수법에 대한 효율적 대처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율하여 스토킹을 처벌하는 것은 그 적용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며 실효성 또한 낮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스토킹 규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처와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의 도입이 요청된다 하겠다.

## References

- Kwak, Young gil, Lim, You Seok, Song, Sang Wk (2011). "The study of the characteristic of stalking- concentrating on the states of stalking in United Sates and Japan and Korea." Korea Association of Criminal psychology, Vol.15, pp.47-76.
- Kim, Yong Uk (2004). "Legislation of Anti-Stalking Act in Korea." Yonsei law journal, Vol.16, pp.49-84.
- Kim, Hak Tai (2011).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alking regulations of Germany and Korea ." Journal of European Union Studies, Vol.28, pp.181-206.
- Kim, Hong seong (2014). "Cause of Stalking and Its Countermeasures."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 Pak, Sang yeol (2003). "A Study on Anti-Stalking Laws in America."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Vol.5, No.1, pp.719-745.
- Pak, Hui yeong (2007).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der Strafbarkeit des Cyberstalking zwischen dem koreanischen und dem deutschen StGB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Vol.39, pp.78-115.
- Lee, kun Ho (2004a). "Stalking Control Strategy and the Limits of the Criminal Law ."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Vol.16, No.2, pp.121-163.
- Lee, kun Ho (2004b). "Criminal Legal Control of Stalking and Typology of the Stalking."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Vol.15, No.1, pp.191-244.
- Lee, kun Ho, Kim Eun Gyeong, Hwang, Ji Tae (2002). "A Study on the Legislative Issues and actual conditions of damage for Stalking."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 Lee, Bong Han (2011). "Policing Strategy According to Victim's Recognitions and Responses to Stalking." Korean Police



- Studies Association, Vol.10, No3, pp.121-146.
- Lee, Sung Ho (2005). "The Concept and Legal Regulation of Cyberstalking." Justice, Vol.83, pp.5-37.
- Lee, Si Hyeong, Lee, Se Yong (1998). "modern society and stalking." Institute for the Study of Rural Societies and Mental Health.
- Kim, Jae Kwon (2009). " A Study on the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Cyber Stalking." The institute of police science, Vol.19, No.2, pp.233-263.
- Lee, Won Sang (2013). "A Study on Criminal Penalty of Stalking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124, No.2, pp.147-186.
- Lee, Jeong, Ho (2008). "Articles :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to Regulate Stalking." e-silhakhoi, Vol.3, pp.115-156.
- Lee, Chang Han (1998). "A study on the realities and countermeasures for stalking crime ."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 Lee, Han Yu (2009). "A legislative bill of stalking(Kim, Jae Gyun National Assemblyman motion) Review Report."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 Lim, Jung Ho (2013). "A legislative bill of stalking(Lee, Nak Yeon National Assemblyman Motion) Review Report."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 The Minor Offenses Law(revision of law 2013. 5. 22. Law Article No 11778)
- The Minor Offenses Law Enforcement Ordinance (revision of law 2013. 10. 30. A Presidential Decree Law Article No 24814)
- Criminal Law(revision of law 2013. 4. 5. Law Article No 1173)
-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revision of law 2011. 8. 4. Law Article No 11002)
- Law on Punishment of Violent Acts(revision of law 2006. 3. 24. Law Article No 7891)
-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revision of law 2013. 4. 5. Law Article No 11729)
- The law regarding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s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개정 2013. 3. 23. Law Article No 11690)
- Sports Hankook. <http://sports.hankooki.com>. (Search 2014. 3. 13.)
- KBS News. <http://news.co.kr>. (Search 2014. 3. 20.)
- JoongAng Ilbo. <http://article.joins.com>. (Search 2014. 3. 20.)
- KyeongIn Ilbo. <http://www.kyeongin.com>. (Search 2014. 3. 20.)
- Korea Women's Hotline. <http://www.hotline.or.kr>. (Search 2014. 3. 24.)
- Tv Daily. <http://tvdaily.asiae.co.kr>. (Search 2014. 3. 24.)